

부전공시행세칙

제정 2007. 3.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7조에서 정한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범위) 부전공 이수를 원하는 자는 본교의 모든 대학 전학과(의예과, 의학과, 보건의료계열, 사범계 관련 학과 제외)에서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조(신청자격) ①제1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학기부터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신청인원은 부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자의 인원수를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21)

제4조(이수학점) ①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으로 지정된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부전공 교과목을 학과(부)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과목을 부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신설 2011.11.1)

제5조(수강지도) ①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지원서를 주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에 따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주 전공 학과장은 부전공 수강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부전공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수강지도를 받게 하며, 부전공 학과장은 학업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1.3.21)

③부전공 교과목이 주 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직과목은 교육학과 관련된 학과의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실험 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부전공 중도 포기자, 이수학점 미달자의 기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제6조(학위수여) ①부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 전공 학사학위와 부전공 학사학위를 같이 수여한다. (개정 2011.3.21)

②부전공을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주 전공 학사학위만을 수여한다. (개정 2011. 3.21)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